

---

#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집행계획

---

2022. 12.



보건복지부  
의료기관정책과

# 목 차

1. 지원 개요 .....	1
2. 지원 대상 .....	1
3. 예산 보조비율 및 지원규모 .....	1
4. 수술실 내 CCTV 설치기준 .....	2
5. 수술실 내 CCTV 설치비 지원 집행계획 .....	3
6. 예산 지원 방식 .....	4
7. 행정사항 .....	5
<붙임> 참고자료 .....	6

## 1. 지원 개요

- (목적)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을 통한 부정의료 행위나 범죄행위의 예방·규명으로 **환자의 안전과 존엄을 확보**
  - \* CCTV 설치비 지원은 ‘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실시
- (근거) 의료법 제38조2(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운영)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**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**
  - \*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의무화('23.9.25~)

## 2. 지원 대상

- 1) 법 시행일('23.9.25.)에 **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가 있는 모든 병원급 이하\*** 의료기관

\* 의원급 의료기관, 병원급 의료기관

- ①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34조, [별표4]에 따른 **수술실을 설치하고,**
- ② **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**(전신마취, 수면마취 등 포함)에서
- ③ **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**

### 2) 지원 제외대상

- ① 법 개정일('21.9.24.) 이전에 법령에서 정한 **CCTV 설치기준\***을 모두 **충족하여 설치를 완료한 의료기관**

\* 30일 이상 보관, 수술실 내부에 설치, HD급 화질 이상 등

- **법 개정일 이후에 신규 설치, 추가 설치인 경우 모두 지원 대상임**

※ 법 시행에 맞춰 설치기준 충족을 위해 개정일 이후 추가적으로 장비를 구입·설치한 경우,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

- ② **휴원·폐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**

\* 휴원시설의 경우 법 시행 기준일 '23.9.25.내에 운영재개 될 경우 지원가능

### 3. 예산 보조비율 및 지원규모

- 예산 보조비율 : 국비 25%, 지방비 25%, 자부담 50%
- 국비 지원규모 : 3,767백만원 ([참고] 참조)

### 4. 수술실 내 CCTV 설치 기준

- 「의료법」 제38조의2 규정에 따른 설치 기준
  - 수술실 내부에 설치
  -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
  -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
  - 접속기록의 보관
  - 영상정보의 탐지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 금지
  - 영상정보 30일 이상 보관
- 「의료법 시행규칙(안)」에 따른 설치 기준
  - 수술실 내부를 촬영, 환자 및 의료진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
  -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
  -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설치
  - 고해상도<HD(High Definition)>급 이상의 성능 보유
  - 법정 보관 기한 준수를 위하여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
  -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
  -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  -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

▣ 화질 등급에 따른 픽셀수 기준 예시 ▣

구분	가로픽셀(A)	세로픽셀(B)	값(A*B)	해상도
HD	1280	960	1,228,800	130만화소
	1280	1024	1,310,720	130만화소
	1440	1080	1,555,200	150만화소
Full-HD	1920	1080	2,073,600	210만화소
	1920	1280	2,457,600	250만화소
Ultra-HD	3840	2160	8,294,400	830만화소

5. 수술실 내 CCTV 설치비 지원 집행계획

- 1) 수술실 CCTV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각 지자체에서 시설의 CCTV 설치현황 및 수요조사를 통해 설치에 필요한 예산 산출
- 2) 법 시행일인 '23.9.25일까지 설치기준에 맞게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

▣ 의료기관 당 설치 단가기준 ▣

(단위: 천원)

수술실 개수	합계	국비(25%)	지방비(25%)	자부담(50%)	비 고
1~2개	4,900	1,225	1,225	2,450	· 카메라, 저장장치, 보안프로그램, 설치비 등 포함 · 의료기관당 단가 한도 내에서 보조비율(자부담 비율) 준수하여 지원
3~4개	10,200	2,550	2,550	5,100	
5~10개	23,000	5,750	5,750	11,500	
11개 이상	38,700	9,675	9,675	19,350	

- 3) 각 의료기관당 단가는 표준금액이며 각 지자체별 여건 등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지원단가 산정\* 가능

\* 국비 지원 단가 상향 조정 없는 한,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별도 예산 추가 지원 가능

## 6. 예산 지원 방식

### 1) 의료기관 CCTV 설치비용 신청 절차

- ① 지자체가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선정('22.10월 수요조사 기반)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자체\* 계약을 통해 구매·설치
  - \*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의사회 등을 통한 공동구매 가능
- ② '22년 10월 실시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법률상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예산 지원 실시
- ③ 각 의료기관 별로 계약하되, 개별 의료기관은 견적서 또는 계약서(안)을 지자체 담당자에 제출하고 담당자가 견적비용의 적절성 등을 확인 후 계약 실시
- ④ 각 의료기관은 설치비용의 전부를 우선 결제하고 난 후, 15일 이내에 각 지자체에 예산 교부 신청
- ⑤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결제한 내역과 계약하기 전 견적서 또는 계약서(안)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예산 교부 및 정산
- ⑥ 지자체는 분기마다 예산교부 현황을 복지부로 제출

#### <정보통신공사업법상 폐쇄회로텔레비전 관련 규정>

- ①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는 정보통신설비공사로 규정(법 제2조 및 시행령 별표1)
- ② 정보통신설비의 공사(설치 및 유지·보수)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함(법 제3조)
- ③ 다만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비공사는 공사제한의 예외

### 2) 의료기관 CCTV 설치 완료 후

- ① 지자체는 서면(사진 등)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설치 여부 확인
- ② 각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 운영 전,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\* 마련

\*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운영·관리방침 마련 필요

- ③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표준(안) 마련 여부 및 적절성을 확인
- ④ 각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운영·관리 방침 표준(안)에 따라 관련 규정 준수 철저

## 7. 행정사항

### ○ 수술실 CCTV 설치 집행 관리

보건복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산 확정내시 통보('22.12.)</li> <li>·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(~'23년 상반기)</li> </ul>
시도 및 시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산 집행 계획 제출(~'23.1.)</li> <li>·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(~'23.3.)</li> <li>· 각 기관별 CCTV 설치 완료(~'23.9.)</li> <li>· CCTV 설치 현황 전수조사(~'23.12.)</li> </ul>

## 참고

##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국비 지원 규모

### □ 시도별 현황 [확정내시]

(단위 : 개소, 천원)

시도	지원 대상 기관					국비 예산
	합계	수술실 1~2개	수술실 3~4개	수술실 5~10개	수술실 11개 이상	
합계	2,091	1,523	439	119	10	3,767,000
서울	634	466	119	41	8	1,187,450
경기	365	244	96	25	-	687,450
인천	77	46	24	7	-	157,800
강원	51	44	6	1	-	74,950
대전	69	51	12	6	-	127,575
세종	11	8	3	-	-	17,450
충북	54	46	7	1	-	79,950
충남	74	59	12	3	-	120,125
광주	84	62	16	6	-	151,250
전북	83	69	13	1	-	123,425
전남	82	65	15	2	-	129,375
대구	112	77	27	7	1	213,100
경북	69	62	6	1	-	97,000
부산	166	109	43	13	1	327,600
울산	32	21	10	1	-	56,975
경남	105	75	26	4	-	181,175
제주	23	19	4	-	-	33,475
미통지 금액						875